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33회 임시회(2019. 9. 2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119
----------	--------

2019. 9. 25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의약과)
- 나. 제 출 일 : 2019. 9. 9.
- 다. 회 부 일 : 2019. 9. 10.

### 2. 제출이유

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응급의료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응급의료 지원(안 제4조)
- 라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정의(안 제5조)
- 마.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후관리 및 홍보활동(안 제6조~제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(미첨부 사유서)

#### 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19. 8. 1.~ 8. 21.(의견 없음)
- 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본 제정조례안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상황에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(AED: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) 사용의 접근성을 높여 응급상황 대비 응급처치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법정의무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구청장이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, 응급의료 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3조)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의무시설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권장시설로 규정(안 제5조)
-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의무 부여(안 제6조)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관리자에게 장비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명시함(안 제7조)

## 다. 종합 의견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의 지정과 설치, 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된 조례로서, 최근 늘어나는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사료됨.

현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(AED) 설치 대수는 368대이며, 자원 및 동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표 1. 자동심장충격기(AED) 총괄 설치현황>

구분	총계	의무기관 <sup>1)</sup>				기타시설(비의무)				
		공공보건 의료기관 (보건소)	119 구급대 구급차	체육 시설 (월드컵경기장)	공동주택 (50세대이상)	지하철	학교	경찰 기관	공공 시설	기타
기관수	243	1	6	1	46	22	50	18	55	44
설치 대수	368	3	8	1	95	27	68	20	85	61

<표 2. 자동심장충격기(AED) 자원별 현황>

구분	총계	서울시 (시비100%)	마포구 (구비100%)	민간자원	기타 (마포소방서)	비고
수량 (대)	368	209	32	119	8	

<표 3. 자동심장충격기(AED) 동별 현황>

구분	총계	공덕	아현	도화	용강	대흥	염리	신수	서강	서교	합정	망원1	망원2	연남	성산1	성산2	상암
수량 (대)	368	32	26	32	8	17	33	21	26	27	10	7	10	6	20	47	46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 :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

- 공공보건의료기관,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, 여객항공기 및 공항, 철도차량 중 객차, 20톤 이상 선박, 50세대이상 공동주택, 철도역사, 여객자동차터미널, 경마장, 5천석이상 종합운동장 등

따라서, 심정지 환자 발생시 주변사람들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폐소생을 위한 설치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설치권장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. 생명의 가치를 경제성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나, 필요시설 주체로 하여금 행정 계도의 방법도 고려하고 현실적인 이용빈도 및 효용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조례 제명이 응급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문 내용은 의료 행위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조례의 한계성이 있어 보이므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행위 전반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정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